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단50763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C(D생)과 피고 사이의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2020. 10.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3. 10,000,000원, 2019. 3. 25. 33,000,000원을 각각 C에게 대출하였다.

나. C은 2020. 10. 27.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서울 은평구 G아파트 H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C은 2020. 12.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I, J, K이 있는데,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46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I, J, K은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361호로 상속포기를 각각 신청하였고, 모두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G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하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인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물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43,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10,000,000원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8. 11. 16.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2018. 11. 16. 1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망인이 2020. 10. 27. 이 사건 아파트와 G 아파트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G 아파트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G 아파트를 2020. 10. 27. 피고에게 증여한 이후 2020. 12. 2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20. 10. 2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이를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것인데,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는 방식으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5.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그러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인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세부담 내지 경제적 측면에서 혜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과 이혼을 합의하여 이혼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망인이 외도를 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과 실제 이혼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G 아파트의 증여 이후

채무초과상태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한정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가액배상을 주장할 뿐, 원상회복을 구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망인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피고는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선행하기로 한다).
-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진